



한국사학진흥재단

2025년

#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



## 일러두기

1. 이 사례집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학재정회계센터의 맞춤형 온라인상담에 게시된 문의사항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문의사항 및 답변은 특정 사학기관이나 산학협력단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삭제하여 실제 게시된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전체 문의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몇 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이 사례집에 소개된 유사한 문의 건이라도 각 사학기관이나 산학협력단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5년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List of Contents

## I 개요

1. 추진목적 및 추진경과
2. 맞춤형 온라인상담 분석
3. 맞춤형 온라인상담 절차

## II 법인회계 상담사례

1. 자산취득 및 관리
2. 지출
3. 예산
4. 기부금

## III 교비회계 상담사례

1. 지출
2. 예산
3. 자산취득 및 관리
4. 수입

## IV 산학협력단회계 상담사례

1. 지출
2. 수입
3. 자산취득 및 관리
4. 결산

# I 개요

1. 추진목적 및 추진경과
2. 맞춤형 온라인상담 분석
3. 맞춤형 온라인상담 절차

## 1. 추진목적 및 경과

### 1. 추진목적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분야별로 준용해야 하는 규칙 및 회계기준이 상이하다. 아래의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구조도를 보면 학교법인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된다.

우선 법인회계는 그 아래로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나뉜다. 법인 일반업무회계는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의 고유한 영역의 회계단위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수익사업회계는 학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단위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그러나 수익사업의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한 경우에는 법인 일반업무회계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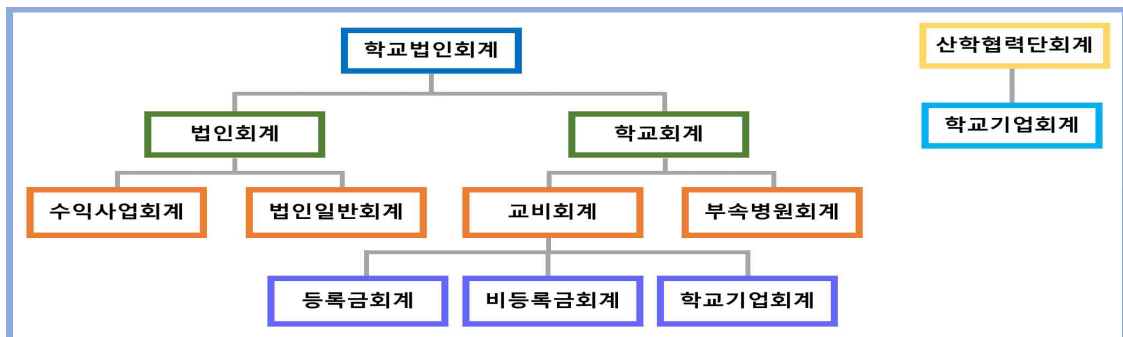
다음 학교회계의 교비회계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의 회계단위로 그 아래로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학교기업회계로 나뉜다. 등록금 및 비등록금회계는 '특례규칙'을 준용하며, 학교기업회계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또한 학교회계의 부속병원회계는 의과대학교의 실습장으로 허가된 부속병원의 구분회계를 의미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아래에 학교기업회계는 '학교기업회계규칙'을 우선으로 준용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특례규칙', '산학협력단 회계규칙' 순으로 준용한다.

이렇듯 복잡한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온라인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회계상담 사례집을 제작하여 회계 담당자가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집은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을 넘어,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관된 회계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 구조도 >



## 2. 추진경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회계센터는 「맞춤형 온라인상담」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하며,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5,314건, 산학협력단 2,136건, 기본재산 263건, 기타 243건으로 총 7,956건의 온라인상담 문의가 게시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

### < 연도별 맞춤형 온라인상담 전체 문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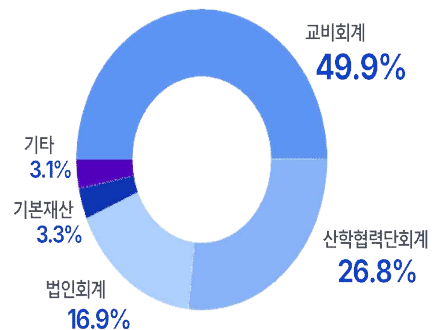
(단위 : 건, '25.12.31. 기준)

연도	구분					계
	법인	교비	산학협력단	기본재산	기타	
2014		173	35	13	25	246
2015		208	55	29	13	305
2016		210	68	23	7	308
2017		318	86	18	11	433
2018	171	181	80	6	19	457
2019	123	330	134	11	19	617
2020	156	374	153	6	18	707
2021	143	365	231	12	54	805
2022	155	456	282	21	29	943
2023	128	412	272	26	24	862
2024	117	478	332	45	22	994
2025	109	707	408	53	2	1,279
합 계						7,956

※ 2014년~2017년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별도 분야로 구분하지 않음

### < 회계분야별 맞춤형 온라인상담 비율 >

법인	교비	구분			기타
		산학협력단	기본재산	기타	
16.9%	49.9%	26.8%	3.3%	3.1%	
합계					100.0%



※ 2014년~2017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는 별도 구분하지 않아 2019년~2025년 평균 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함(추정치)

## 2. 맞춤형 온라인상담 분석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맞춤형 온라인상담」을 통해 총 7,956건의 회계상담이 접수 및 처리되었으며, 연도별 상담 건수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 상담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1,2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회계 기준의 복잡성 증가, 대학 재정환경 변화, 현장 회계 담당자의 실무적 판단 부담 확대 등에 따라 온라인 상담에 대한 현장의 의존도와 활용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전체 상담을 회계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교비회계(49.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산학협력단회계(26.8%), 법인회계(16.9%)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 및 기타는 각각 3%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가 일상적인 지출·수입 발생 빈도가 높고, 다양한 자원과 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규정 해석에 따른 판단 여지가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장 실무자의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임을 보여준다.

### ◎ 법인회계

2025년 법인회계 상담은 상위비중의 유형을 제외하고 전입·전출, 기본재산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특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절차, 주식 및 PFV 투자 가능 여부 등 법인의 수익용 재산 운용과 관련된 전문적 문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학교 전출 방식, 법인 임직원 인건비 지급 및 복리후생비 집행 범위 등에 대한 문의도 보다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인회계가 단순 집행을 넘어 자산의 성격, 자원 간 이동, 목적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리와 자산의 효율적 운영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2025년 법인회계 맞춤형 온라인상담 주요 문의 현황 >

(단위 : 건, '25.12.31. 기준)

유형	문의건수	비율
자산취득 및 관리	21	19.3%
지출	20	18.3%
예산	11	10.1%
기부금	9	8.3%
전입 및 전출	9	5.5%
기본재산 관리	6	4.6%
결산	5	4.6%
기금 및 적립금	5	3.7%
수입	4	2.8%
기타	19	17.4%
합 계	109	100.0%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년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

한편, 2024년과 2025년 맞춤형 온라인 상담 중 법인회계 관련 문의를 비교한 결과, 두 연도 모두 수익·임대 관련 회계처리 및 전표 작성 등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문의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회계기준 적용 여부 및 처리 기준 확인 등 기준 중심의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계정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25년에는 수익사업 및 임대수입 관련 회계처리 등 법인 자산의 수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중심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기부금, 전입·전출 등 재원 간 이동과 관련된 관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의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법인회계 관련 문의는 단순한 회계기준 확인 중심에서 실제 회계처리 및 재원 관리와 관련된 실무 중심 문의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운영 및 재원 관리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법인회계 맞춤형 온라인상담 문의 변화(2024년→2025년) >

2024년	▶	2025년
<b>기준 확인 중심</b> - 회계기준 적용 여부 확인 - 계정과목 적정성 검토 - 기초 자산관리 중심		<b>실무·운영 중심</b> - 실제 회계처리 방법 문의 - 자산 운용·투자 관련 문의 - 재원 이동 및 관리 판단

## ◎ 교비회계

교비회계에서는 지출 관련 문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예산과 수입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이는 교비회계가 교육·연구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출이 빈번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규정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출 및 예산 관련 문의가 집중된 점은 관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 2025년 교비회계 맞춤형 온라인상담 주요 문의 현황 >

(단위: 건, '25.12.31. 기준)

유형	문의건수	비율
<b>지출</b>	<b>218</b>	<b>30.8%</b>
<b>예산</b>	<b>85</b>	<b>12.0%</b>
<b>자산취득 및 관리</b>	<b>83</b>	<b>11.7%</b>
<b>수입</b>	<b>67</b>	<b>9.5%</b>
기부금	55	7.8%
기금 및 적립금	44	6.2%
결산	43	6.1%
인건비	31	4.4%
구매 및 계약	28	4.0%
기타	53	7.5%
<b>합 계</b>	<b>707</b>	<b>100.0%</b>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년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

2024년과 2025년 맞춤형 온라인 상담 중 교비회계 관련 문의를 비교한 결과, 두 연도 모두 계정 과목, 지출 기준, 수입 처리 등 사립대학 회계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 지출 항목의 적정 계정과목을 확인하거나, 교비회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점검하는 문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반면, 2025년에는 회계 기본 원칙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RISE 등 새로운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와 기본재산 변경, 적립금 활용 금융상품 투자 등 대학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과 관련된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비회계 관련 문의는 실제 회계처리 및 자원 관리와 관련된 실무 중심 문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등록금, 기부금, 장학금 등 **다양한 재원을 관리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자원 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대학이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수익 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교비회계 맞춤형 온라인상담 문의 변화(2024년→2025년) >

2024년	2025년
<b>기준 확인 중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 항목 계정과목 확인</li> <li>- 회계처리 기준 적용 여부 확인</li> <li>- 실습비·지원비 등 기본 문의</li> <li>- 단순 예산 집행 중심</li> </ul>	<b>실무·운영 중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 및 활용 관련 문의</li> <li>- 자원 관리 판단 요구</li> <li>- 정책대응(RISE) 관련 문의</li> <li>- 적극적 재정 운영 및 활용 확대</li> </ul>

## ◎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에서는 지출 및 수입 문의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타회계 대비 결산 문의 비중이 높았다.

### < 2025년 산학협력단회계 맞춤형 온라인상담 주요 문의 현황 >

(단위: 건, '25.12.31. 기준)

유형	문의건수	비율
지출	115	28.2%
수입	74	18.1%
자산취득 및 관리	44	10.8%
결산	38	9.3%
인건비	26	6.4%
예산	25	6.1%
기부금	19	4.7%
구매 및 계약	13	3.2%
전입 및 전출	13	3.2%
기타	41	10.0%
<b>합 계</b>	<b>408</b>	<b>100.0%</b>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년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

이는 산학협력단회계가 연구 관련 사업과 연계된 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연구비 집행, 간접비 처리, 수익 인식 시점 등 사업 단계별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판단 수요가 높으며, 정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024년과 2025년 맞춤형 온라인 상담 중 산학협력단회계 관련 문의를 비교한 결과, 두 연도 모두 연구비 집행, 수익 계정 처리 등 회계처리 기준과 함께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지원 또는 이관 시 회계 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정과목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문의가 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연구비 집행 및 수입 계정의 적정 처리 등 지원사업 관련 회계 기준과 기초 자산의 분류, 내용연수 적용 등 기본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문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반면, 2025년에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 및 RISE 등 새로운 국가 정책과 관련된 문의,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비용 처리, 연구 인력 급여 지급 방식 등 제도 해석과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기업 계정 처리, 외부 회계감사 준비 등 산학협력단의 선제적 운영·관리와 관련된 문의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산학협력단회계 관련 문의는 연구비 집행 및 수익 계정 처리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와 같은 실무 중심 질의에 더해, 제도 해석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질의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와 함께 연구비 관리, 기술이전 수익 처리, 인건비 집행 등 산학협력단 운영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산학협력단회계 맞춤형 온라인상담 문의 변화(2024년→2025년) >

2024년	2025년
<b>기준·기초 관리 중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 집행 기준 및 절차 확인</li> <li>- 수입 계정 처리 기준</li> <li>- 자산 분류 및 내용연수 등 기초 관리</li> <li>- 지원사업 회계기준 중심</li> </ul>	<b>제도 해석·운영 관리 중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처리규칙 개정 및 정책 대응 문의</li> <li>- 연구비·인건비 지급 방식 등 실무적용</li> <li>- 대학과 산단 간 비용처리 및 역할 구분</li> <li>- 학교기업, 외부감사 대응 등 운영관리 확대</li> </ul>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2025년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은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전반에서 상담 비중이 높게 나타난 주요 유형을 선별하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계처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 사례집과 비교하여 유형별 문의사항 수를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수록하는데 중점을 두어 회계 담당자의 실무 적용성과 참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3. 맞춤형 온라인상담 절차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https://support.kasfo.or.kr>)의 「맞춤형 온라인 상담」에 로그인 후 상담을 원하는 회계분야를 선택하여 문의를 신청하면 추후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 맞춤형 온라인상담 절차도 >



#### ① 맞춤형 온라인상담 신청

- 신청인은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https://support.kasfo.or.kr>)에 로그인하여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통해 원하는 회계분야를 선택 후 본인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작성하여 문의 글을 게시한다.

#### ② 추가 확인

- 질의 내용의 정확한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계사는 필요 시 유선을 통해 추가 설명이나 상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맞춤형 온라인상담 답변 게시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계사는 신청인의 문의 글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게시판에 직접 답변을 제공한다.

#### ④ 온라인상담 답변 확인

- 신청인은 게시된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요청 시 SMS 또는 E-mail을 통해 문의 글에 대한 답변 등록 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안내 사항으로, 본 맞춤형 온라인상담에서는 문의 사례를 모두 공개 운영하며, 문의를 게시한 시점부터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작성된 답변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증거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한다. 또한 문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하며,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무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Ⅱ

## 법인회계 상당사례

1. 자산취득 및 관리
2. 지출
3. 예산
4. 기부금

**법인회계**

**1. 자산취득  
및 관리**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1

Q :

법인에서 수익용예금이 만기되어 일부는 다시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분할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수익용예금의 만기에 따른 예치 기관 변경 및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 예탁급여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황과 같이 수익용예금의 만기가 된 전액을 다시 수익용 예금과 공제회에 가입으로 재예치하는 것이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나 성격 변화가 없으므로 관할청(교육부)의 별도 허가 없이 법인 이사회의 의결(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처분 허가 신청은 필요 없으나, 변경된 예금 내역은 매년 4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기본재산 현황 보고 및 결산 보고 시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3.11.)」 25P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2

Q :

임직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일반회계에서 골프장회원권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회계 처리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학교법인의 골프장회원권 구입 가능여부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법인이 일반회계(법인일반 업무회계)를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다면 골프장 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비용 계정이므로, 자산성이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복리후생비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액의 자산 취득 및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교직원 모두가 골프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감사 시 입증 자료 등으로 사용 대장 등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2호(회계원칙)**

-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1. 자산 : (관) 1200 투자와기타자산 (항) 1240 기타자산 (목) 1249 기타자산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3

Q :

법인에서 학교용지 설정을 위한 토지를 법인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교육용재산으로 설정하여 대학 회계에 반영하기 위한 회계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학교법인에서 학교용지 활용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대학의 교육용 재산으로 이관할 시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우선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법인일반회계 분개 : (차) 토지 XXX / (대) 예금 XXX

이후 법인과 대학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① 학교법인(법인일반회계)의 처리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자산을 감소시키고, 대학에 투입된 투자액을 의미하는 '설치학교(대학)'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법인일반회계 분개 : (차) 설치학교 (대학) XXX / (대) 토지 XXX

#### ② 대학교(교비회계 - 비등록금회계)의 처리

대학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은 것이므로 자산(토지)을 증가시키고, 그 대응 계정으로 '법인기본금'을 인식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취득 및 이관은 일반적으로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합니다.

- 교비회계(비등록금) 분개 : (차) 토지 XXX / (대) 법인기본금 XXX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1. 자산 : (관) 1200 투자와기타자산 (항) 1210 설치학교 (목) 1211 대학
2. 부채 및 기본금 : (관) 3100 기본금 (항) 3110 출연 기본금 (목) 3112 법인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4

Q :

건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실제 철거되는 월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건물 철거 및 신축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례규칙은 주로 개념적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상세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무 적용을 위해 해설서나 안내서 등을 배포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기중에 취득, 또는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시, 날짜에 관계없이 취득하거나 처분한 달을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는 월까지 감가상각을 해야하며, 유형자산은 폐기되는 시점까지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를 인식해야 하므로 철거한 달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최종 감가상각누계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을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을 '고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43P
  - 구 건물의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인식하며 철거비용도 전액 비용 인식
  - 신 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구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제4항(감가상각)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10 시설관리비 (목) 4211 건축물관리비
  - 2. 운영비용 : (관) 4400 교육외비용 (항) 4420 기타교육외 비용 (목) 4428 고정자산폐기손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5

Q :

법인 산하 대학부속병원에서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주거래 은행에서 온라인뱅킹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서버는 본원 전산실에 설치되어 유지보수도 은행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스템과 서버를 본원 자산으로 등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자금관리시스템 자산 등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례규칙은 주로 개념적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상세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실체를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경우 단순히 은행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병원 내에 설치한 것이므로, 본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등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인식 10.5 :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6

Q :

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보증금 규모가 커 단순 예금으로 예치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채권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운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법인 보유의 임대보증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은 반환 의무가 있는 확정 부채이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나 주식 투자는 불가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동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3.11.)」 13P

###### ▶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제한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의 용도로 사용(교비회계로 전출 및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 하는 경우, 사실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단,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이 경우라도 법인자체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미예치 임대보증금으로 보고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반영하여야 함.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7

Q :

법인은 현재 2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재예치시 1년 정기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금의 예치기간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 또 기간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수익용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의 예치 기간 변경 및 관련 절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익용 예금의 예치기간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학교법인의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1년 정기예금으로 기간을 변경하여 재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익용기본재산(수익용예금 포함)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예치기간만 연장하거나, 예치금액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용예금의 재예치 및 기간 변경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3.11.)」 25P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회계**

## **2. 지출**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지출) 1

Q :

학교법인 수익사업부의 소유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복구비 및 청소비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 전액을 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적용하여 보험처리 시, 법인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 :

수익사업부 소유 건물의 누수로 인한 입주사 피해보상금 및 보험 자부담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보상금 전액을 법인에서 지급할 경우 건물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금은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건축물관리비 등)이 아닙니다. 이는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비용이자 비경상적인 지출이므로, '잡손실'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영업배상 보험 적용 후 지급하는 자부담금 역시 사고처리를 위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경비입니다. 지출의 원인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있으므로 피해보상금 본체와 동일하게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2. 운영비용 : (관) 4400 교육외비용 (항) 4420 기타교육외 비용 (목) 4421 잡손실
-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10 시설관리비 (목) 4211 건축물관리비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제3항(적용범위등)

- ③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지출) 2

Q :

학교법인에서 설치학교 교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회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학교법인에서 설치학교 교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사용해야 할 계정과목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는 설치학교 교직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학기관의 보수나 수당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인이 학교로 자금을 보내 학교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이 회계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경상비전출금' 계정과목으로 해당 금액을 학교로 전출하고 학교는 해당 자금을 '경상비전입금'으로 수취한 후, 학교의 포상 규정 등 지급 근거를 확인하여 '성과급(상여금)' 또는 '직원각종수당' 형태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운영수익 : (관) 5200 전입및기부금수입 (항) 5210 전입금수입 (목) 5211 경상비전입금
2. 운영비용 : (관) 4500 전출금 (항) 4510 전출금 (목) 4511 경상비전출금

##### 2)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2호(회계원칙)

-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지출) 3

Q :

현재 설치학교 인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합의를 권유 받은 상황으로, 합의금 지급을 위한 적절한 회계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 :

설치학교 인사 관련 소송 합의금의 지출 가능 여부와 적절한 계정과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의 권고에 따른 소송 합의금(분쟁해결금) 지출은 가능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학교법인이고, 해당 교직원의 임면권이 법인에 있는 경우, 관련 합의금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법인 세출예산의 '잡지출-제지출-소송비' 과목을 통해 합의금을 집행하시고, 결산 시 '잡손실'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3.11.)」 40P

(집행 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집행 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지출) 4

Q :

현재 법인은 관용차량이 없으며, 비상근임원 업무 수행 시 일수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용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업무 수행 시 사용하지 않으면 여비교통비를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관용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 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몇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 정산의 원칙과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용차량이 아닌 개인이 직접 교통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후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여비교통비를 청구하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비상근임원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증빙 없는 정액 지급은 보수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실비 정산을 택하시기 바라며, 지급 시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 및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관용차량에 대한 사용대상 명확화 및 향후 감사 시 입증 자료 등으로 차량 운행일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임원의 보수 제한)

-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5P

여비교통비는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여비지출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 후에 지급되어야 한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2호(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지출) 5

Q :

법인에서 설치학교 교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법인일반 회계에서의 적절한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법인에서 설치학교 교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시 적절한 계정과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포상금이 교직원의 성과에 따른 것이라면 법인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법인회계에는 해당 교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인회계에서는 '경상비전출금' 계정으로 대학으로 보내고, 교비회계에서는 교원일 경우 '교원상여금',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상여금' 계정을 이용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2. 운영비용 : (관) 4100 보수 (항) 4110 교원보수 (목) 4112 교원상여금
- 2. 운영비용 : (관) 4100 보수 (항) 4120 직원보수 (목) 4122 직원상여금
- 2. 운영비용 : (관) 4500 전출금 (항) 4510 전출금 (목) 4511 경상비전출금

**2) 교육부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관련 근거 :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

\*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함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지출) 6

Q :

총장 퇴임 후 이사회에서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현재 법인정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별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퇴임 총장에 대한 전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전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감사나 실태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립대학(법인)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학교 법인은 내부규정(정관 또는 보수규정), 이사회 의결, 그리고 예산편성 절차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임하는 이사장이나 총장에게 내부 규정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전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전별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려 한다면, 이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므로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임원의 보수 제한)

-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57P

###### 3. 보수와 관련된 실태점검 지적사례

[사례1]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 지급

: 보수규정상 수당의 정의 및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명확히 마련이 되어야 하며,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수당이 적절히 지급이 되어야 함

##### 3)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3.11.)」 20P

###### ○ 인건비

- 지급 근거 없는 인건비성 경비 지급 금지, 인건비의 과도한 인상 지양
- 내부규정과 이사회 의결 및 예산편성 절차 없이 인건비성 경비 지급 금지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지출) 7

Q :

법원에서 수령한 기부금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에게 법원에서 직접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법원에서 수령한 기부금으로 공모전 상금을 법인이 직접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이 일반기부금 또는 장학금 지급 용도의 지정 기부금인 경우, '교외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단, 상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내부의 '장학금 규정'에 공모전 시상의 종류, 선발 인원, 평가 기준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모전 자체가 법인의 주요 행사로 기획되었다면 그 상금 역시 행사비의 일부이므로 '행사비'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학교의 장학 실적 관리를 위해 법인이 '경상비전출금'으로 학교에 자금을 보내고, 학교가 자체 장학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20 학생경비 (목) 4321 교외장학금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30 운영비 (목) 4239 행사비
  2. 운영비용 : (관) 4500 전출금 (항) 4510 전출금 (목) 4511 경상비전출금

**법인회계**

# **3. 예산**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예산) 1

Q :

수익사업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법인 일반회계에서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미지급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법인회계에서 예산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지급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시정지시에 의해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추경 절차 없이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예산) 2

Q :

학교법인이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2024학년도 추경 및 2025학년도 본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결산 수치 조정을 위한 출납폐쇄 전 정리추경이 가능한지에 문의드립니다.

A :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준예산 체제 운영 중 2024학년도 결산 조정을 위한 정리추경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출납 폐쇄 기간은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한 자금의 유출입을 정리하는 기간일 뿐, 지나간 회계연도의 예산을 새롭게 성립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에 따른 준예산 규정에 의거하여 필수 경비(보수, 시설 유지비, 법령상 의무 경비 등)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제1항(준예산)

-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보수 및 시설유지비 등 필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예산) 3

Q :

의정갈등으로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한 상황에서 예산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전용 제한 시점과 추가로 부속병원회계의 '변동예산' 규정(특례규칙 제14조)이 일반 예산 규정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부속병원회계에서 예산 감액 편성과 관련 예산전용 제한 시점 및 변동예산 적용 범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예산 편성과정'은 예산요구 제출부터 이사회 심의 후 최종 예산이 확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의 모든 단계에서 삭감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속병원회계는 수입의 변동에 따라 지출이 연동되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즉, 예산 초과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제1항(예산의 전용)

-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향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예산) 4

Q :	법인 수익사업회계에서 상용근로자 관련(퇴직적립금, 급·상여, 건강보험료 등) 예산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p>법인 수익사업회계에서 상용근로자의 인건비(급·상여, 퇴직적립금, 건강보험료 등) 계정과목 분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법인 수익사업회계에서 상용근로자(직원)의 인건비(급·상여, 퇴직적립금, 건강보험료 등) 계정과목 분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법인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보고를 위한 예산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p> <p>급여 및 상여금에 대해서는 직원보수(관)-직원보수(항) 내의 목 계정과목(예: 직원급여(4121), 직원상여금(4122) 등)으로 처리하시고, 건강보험료나 직원 퇴직금은 직원법정부담금(4124), 직원퇴직금(4127)으로 각각 처리하시면 됩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제3항(적용범위등)

- ③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 ②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예산) 5

Q :

법인 수익사업회계의 수익용기본재산인 신탁예금 만기 시, 교육부 승인을 받은 부채 상환액 외의 잔액을 특정 목적 없이 일반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지와 만기 금액 전체를 2026년 본예산 수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수익용기본재산(신탁예금) 만기 후 부채 상환 외 잔액의 관리 방법 및 예산 편성 항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던 예금을 학교 미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일부를 승인받을 예정이라면, 나머지 잔액은 원칙적으로 다시 수익용 예금으로 재예치하여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익용 예금의 단순 만기 연장이나 재예치는 회계적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2026년 본예산에는 만기 금액 전체가 아닌, 교육부 승인을 받아 실제 인출하여 사용할 금액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인회계**

## **4. 기부금**

## 법인회계

### - 법인회계(기부금) 1

Q :

장학재단으로부터 법인 산하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공모전 상금 목적으로 자금을 기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 요건 미충족으로 경상비 전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이 학생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장학재단으로부터 기탁받은 장학금 및 상금 재원을 법정부담금 전출 미충족으로 인해 학교로 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전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로의 경상비 전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회계에서도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인회계에서 '교외장학금(4321)'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모전 상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 내부의 장학금 관련 규정에 해당 공모전의 시상 기준, 선발 인원, 지급액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20 학생경비 (목) 4321 교외장학금

## 법인회계

### - 법인회계(기부금) 2

<b>Q :</b>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여 영수증 처리 및 홈택스 신고를 마친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해 발전기금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별도로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b>A :</b>	<p>학교법인에서 기부금을 수령한 이후의 내부 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 필요성, 그리고 기부금 사용 내역의 대외 공개 의무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기부금을 적립금(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당기 운영비로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의 접수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p> <p>또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종교단체 제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기금운용심의회 운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3)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회계

### - 법인회계(기부금) 3

Q :	<p>현물 기부받은 장비의 가액 산정 시, 장비 자체의 감가상각 후 금액 외에 기부자가 부담한 부품비 및 관련 인건비를 포함한 총 금액을 기부가액을 책정할 수 있는지와 기부자의 거래명세서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p>
A :	<p>기증받은 장비의 현물 가액 산정 범위 및 증빙 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현물기부 자산은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부자가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부품 교체비용과 관련 인건비까지 부담하여 제공하였다면, 이는 기부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현물기부금 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현물기부 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은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거래명세서 외에 유사한 중고 장비의 시세 등 증빙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제1항(자산의 평가기준)

- 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42P

- ① 취득금액 및 인식시기  
 ~ 일반적인 관점에서 취득원가주의란 그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원가(부대비용)를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부대비용까지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부대비용의 범위는 운반비, 설치비, 관련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자산의 평가기준)

- ②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 법인회계

### - 법인회계(기부금) 4

Q :

학교 주거래 은행과 같이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법인회계 행사비 용도로 특정하여 기부금을 받을 경우, 이를 법인회계의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법인 행사비 용도로 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부 주체가 주거래 은행 등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인 경우, 해당 기부금은 사용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의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세입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기부금에 대가성이 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3.11.)」 35P

##### 3. 기부금

법인회계에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기부금\* 수령 가능(‘23.6.1. 시행)하지만,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세입처리하여야 함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 법인회계

### - 법인회계(기부금) 5

Q :

현물 기부로 도서를 수령하고자 하는데 기부자가 카드 결제 금액 외에 개인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를 한 경우, 기부금 처리 금액을 포인트 포함 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상 실결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에 문의드립니다.

A :

기부자가 기부 물품 구매 시 결제 금액에 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물 기부의 기부금 가액은 영수증상의 실결제 금액이 아닌 기부 시점의 시가(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기부 과정에서 사용된 포인트 역시 해당 물품의 전체 가치(시가)를 위해 지불된 것이므로, '포인트 포함 총액'을 시가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원래 가격이 해당 시점의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한 총액 기준 기부금 수입 및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제2항(자산의 평가기준)

- ②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33P

기부가 금전의 형태가 아닌 현물로 이루어지게 되면 현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을 현물기부금으로 인식한다. 교비회계의 회계구분에 따라 기부금 수입은 교비회계의 비등록금 회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 Ⅲ

## 교비회계 상당사례

1. 지출
2. 예산
3. 자산취득 및 관리
4. 수입

# 교비회계

## 1. 지출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1

Q :

대학에서 신규 PC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PC의 철거 비용을 새 자산의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구매 시 설치비와 부가가치세를 자산 가액(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

구매물품의 취득원가 산정 시 설치비 및 부가세 포함 여부와 기존 물품의 철거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설치비 및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출된 모든 원가(부대비용)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반비,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설계 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받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42P

###### ① 취득금액 및 인식시기

~ 일반적인 관점에서 취득원가주의란 그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원가(부대비용)를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부대비용까지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부대비용의 범위는 운반비, 설치비, 관련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 인식 10.8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 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용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1) 내지 (9)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2

Q :

대학원 입시 홍보(SNS, 대학게시판 등)를 수행한 본교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비용(업무 위탁 성격)을 지급할 때, 이를 입학전형료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대학원 입시전형의 홍보 활동을 수행한 대학원생에게 입학전형료 재원으로 비용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원은 해당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학원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칙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서(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료 중 홍보비 항목에 '전형안내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 제1항 제1호 마목: 전형안내 수당 :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 제1항 제2호 가목: 홍보비 :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2. 지출항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30 입시 관리비 (목) 4331 입시수당
  - 2. 지출항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30 입시 관리비 (목) 4332 입시경비
- 3)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12P
  -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박람회, 홍보매체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음
    - 입학전형 정보 제공을 위한 대입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그 관련식음료 비용, 홍보매체(신문, 전판, 온라인 매체 등) 활용 비용
    - 전형안내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3

Q :

입학관리팀 직원의 본연의 업무인 입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수당 또는 격려금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입학 업무 담당 입학관리팀 소속 직원들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을 교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비회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이나 수당 지급 규칙에 해당 항목과 지급 기준(대상,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입학전형료 수입을 재원으로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實費), 예를 들어 초과근로수당이나 초과근로한 직원들의 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1. 수당 :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4

Q :

대학에서 책을 출판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이 해당 책의 저자인 경우 보수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여 비등록금회계로 인세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교직원이 도서를 집필한 경우 비등록금회계로 인세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교직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부로 책을 집필한 경우, 책의 소유 및 인세 수입은 대학에 귀속되며 대학은 규정에 근거하여 소정의 보상 성격의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교육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등록금 및 비등록금 회계에서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교직원이 근로계약 상 업무와 무관하게 집필한 책을 대학이 출판하는 경우, 해당 행위(출판 및 인세 지급)는 집행의 타당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책 또는 교육과 연관성이 적은 책을 대학에서 교비회계를 사용하여 출판을 도와주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이 확보된 위원회 개최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그 타당성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100 보수 (항) 4120 직원보수 (목) 4123 직원각종수당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5

Q :

대학은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현재 해외에서 강의를 위해 본교 교원의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 목적에 맞는 교원이 본교에 없어 본교가 속한 재단 내 타 대학 교원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본교 규정에 따른 항공권, 현지 체류비 등을 '여비교통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동일 재단 내 타 대학 소속 교원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타 대학 소속 교원에게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비교통비'는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정의되어 비록 같은 재단 내의 대학이라 할지라도, 타 대학 소속 교원은 본교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교의 여비 규정에 따라 계약 원가를 산정한 후,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 용역 계약 형태로 진행하고 '일반용역비' 등의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1 여비교통비
-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30 운영비 (목) 4233 일반용역비

2)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회계의 구분 등)

-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6

Q :

평생교육원 등 수익을 창출하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설기관에서,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강사와 법무 대응 및 소송 비용을 해당 부설기관의 운영비 계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대학 부설기관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관 업무 관련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설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학사, 인사, 계약 등)에 대한 소송 비용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내 해당 기관의 운영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3.11.)」 40P

##### 6.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7

Q :

총장 본인이 출장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등의 회계 처리 방식과 출장명령서 작성 및 결재 절차를 다른 교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총장 본인의 출장 시 숙박비 및 식비 등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총장 역시 다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받아야 하며, 지출 시에는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장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나, 만약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여비 중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국내 출장의 경우, 다른 교직원과 동일한 결재 절차를 가져가며, 해외 출장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출장의 경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부총장 또는 담당 부서(기획처, 총무처 등)에서 기안하고 총장이 결재하는 방식의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총장,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전년도 결산기준)의 공시가 의무화 되었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익월 10일 까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1 여비교통비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30 운영비 (목) 4234 기관장 업무 추진비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8

Q :	<p>특례규칙 해설서 상 '정산을 요구하는 연구비'가 무엇인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 대상 경비를 '연구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p>
A :	<p>특례규칙 해설서 상 '정산을 요구하는 연구비'와 '연구관리비' 구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정산을 요구하는 연구비는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사전에 제출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개별 연구자에게 선지급되었거나, 연구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p> <p>정산을 요구하는 연구비는 연구 결과물 산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형태와 구분되며, 해당 금액이 연구와 관련된 직접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사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와 '연구관리비'의 구분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가급적 개별 연구의 직접적인 경비는 연구비로, 연구를 지원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부수적·공통적 경비는 연구관리비로 일관성 있게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76P

가.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는 연구활동으로 인해 결과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교내연구비의 지원시에는 반드시 연구 결과물을 통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물이 없이 지원하는 연구비는 교원에 대한 수당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연구비로 처리할 수 없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10 연구비 (목) 4311 연구비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10 연구비 (목) 4312 연구관리비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9

Q :

교육시설 내·외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비용을 등록금 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출 금액이 등록금회계 수입의 10%를 초과할 경우의 제한 사항 및 필요 절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A :

교육시설의 보수공사 비용의 등록금회계 집행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 수입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해당하므로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교육시설의 내·외부 보수공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수공사가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신축, 증축, 시설확충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 등록금회계 자금 계산서 수입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출액이 등록금회계 수입 총액의 10% 초과할 경우,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13조제2항제2호(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5P

-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단,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 매입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10

Q :

교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결제한 AI Tool 사용료를 지원할 때 적합한 지출 세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A :

교직원의 업무용 AI Tool 사용료 지원에 관한 계정과목 및 세무 처리 구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AI Tool 월 사용료를 기관에서 지원할 때, '리스임차료'보다는 사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아래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전임교원(연구 목적) : 연구관리비 계정
  - 직원(행정 사무 목적) :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또는 기타운영비
  - 공통 사항 : 대학 전체가 사용하는 연간 라이선스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 또는 기타운영비 중 하나를 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
- 추가로 직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결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10 연구비 (목) 4312 연구관리비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3 소모품비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9 지급수수료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11

Q :

원격대학의 비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강의시수 기반 강의료에 대해 교원의 유형(객원, 겸임, 강사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시간강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전임교원이 정규 교과목의 온라인 강의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개발비 역시 시간강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원격대학의 비전임교원(겸임·객원 및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및 콘텐츠 개발비의 적정 계정과목 분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시간강의료는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로 지급 대상이 아닌 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비전임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월정액의 기본급 없이 강의 시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시간강의료'로 인식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자료 개발에 대한 수당의 경우, 교육부의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등 법인·교비회계 집행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규정 상 명시되어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 시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강의료'로, 그 외 교원의 경우 '각종 수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지출된 콘텐츠 관련 비용(수당, 개발비 등)에 대해서 무형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100 보수 (항) 4110 교원보수 (목) 4111 교원급여
2. 운영비용 : (관) 4100 보수 (항) 4110 교원보수 (목) 4113 교원각종수당
2. 운영비용 : (관) 4100 보수 (항) 4110 교원보수 (목) 4115 시간강의료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4조제2항(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 ②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서

1. 자산 : (관) 1300 고정자산 (항) 1320 무형 고정자산 (목) 1321 무형 고정자산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지출) 12

Q :

기관평가인증(최초, 갱신, 사후점검) 심사 수수료를 집행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 :

기관평가인증 심사 수수료의 적정 계정과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관평가인증 심사 수수료는 '일반용역비(4233)'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관평가는 단순히 어떤 행정적 절차를 위해 지급한다기 보다 인적평가가 수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평가를 위한 심사 수수료가 아닌, 인증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인증유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인적 용역의 성격보다는 행정적 수수료 성격이 강하므로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30 운영비 (목) 4233 일반용역비
-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9 지급수수료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8P

다. 일반용역비

일반용역비는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단순히 어떤 행위를 위해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기록하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교비회계**

## **2. 예산**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1

Q :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후 수업료 증가에 따라 장학금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해당 예산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후 증가한 예산의 조정이 불가한 경우,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최종 추경 이후라도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당초 예산편성 규모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한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제1항(예산의 전용)

-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향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제1항(예비비)

- ① 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예비비)

-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2

Q :

대학원의 운영 체제를 4학기에서 2학기 단축함에 따라 학기 당 등록금을 2배로 인상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재책정 및 심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대학원의 등록금 재책정 및 심의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을 재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하나, 책정되는 등록금 인상률은 반드시 법정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을 위반하여 초과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2)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제1호(회계의 구분 등)

-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위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3

Q :

3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할 때, 1회차 지급 후 2회차 지급분이 기말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에 몇회분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명예퇴직금을 3년 분할 지급 시 1회차+2회차 분이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예산 반영 범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제 지급되는 1회차 지급분을 반영하고, 2회차 지급분은 상환 기한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금액이므로, '미지급금(유동부채)'으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1회차+2회차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음 회계연도에 2회차 미지급금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는 예산서상 기타고정부채상환 등의 계정을 통해 지출을 반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회차 지급분이 기말 기준 1년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 채무라면, 당해연도 예·결산 시 1회차, 2회차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4조제2항(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 ②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4

Q :

예산 확정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발생한 예산 전용(항간·목간 전용) 또는 예산 조정 내역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본예산 대비 증감액에 포함한 정식 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본예산 확정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시행한 전용 및 조정 내역을 추경 예산안의 증감액에 포함한 정식 예산으로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위해 추경 전이라도 동일 관내 항간·목간 전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용액은 공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해당 전용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에 정식 반영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80P

######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전용은 특정비용('목')의 예산잔액이 부족한 경우 동일 '관' 또는 동일 '항'에 속하는 다른 '목'에 해당하는 비용계정의 잔액을 끌어올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특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금계산서]의 지출항목에 전용증감액을 통해 해당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5

Q :

학교기업 설립 전 예산 편성 가능 여부, 그리고 예산 편성 전 교비로 선집행 후 사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학교기업 설립 관련 예산 편성 및 예산 편성 전 교비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기업 설립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공식적인 설립 등기 이전이라도 학교기업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산 집행의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먼저 성립시킨 후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편성없이 교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은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6

<b>Q :</b>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사업비 확정 금액이 결정되어 집행 기간이 촉박한 경우, 총장 결재를 거쳐 예산을 선집행하고 사후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A :</b>	예산 성립 전 선집행하여 사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성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나,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예산 성립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및 외부 지원금 사업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문의 상 '사업비'가 만약 내부 사업비라면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76P

##### 2. 예산 관리 유의 사항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특례규칙 제12조)

-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으며, 추경예산절차 없이 기존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함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7

<b>Q :</b>	지원사업 예산으로 수업 관련 공간 개선 및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개선비용과 집기 비품 구입비를 '건축물관리비' 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b>A :</b>	<p>공간 개선 및 구축 사업의 적정 계정과목으로 '건축물관리비' 또는 '건설중인자산'이 적절한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공간 개선 및 구축 공사가 해당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축물관리비'가 아닌 건물 또는 구축물 등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순 도장, 유리 교체 등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집기 비품(가구, 의자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 성격에 따라 반드시 '집기비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p> <p>따라서, 환경개선비용과 집기 비품 구입비는 계정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1. 자산 : (관) 1300 고정자산 (항) 1310 유형 고정 (목) 1315 집기비품
1. 자산 : (관) 1300 고정자산 (항) 1310 유형 고정 (목) 1319 건설중인자산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10 시설관리비 (목) 4211 건축물관리비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즉시상각의 의제)

-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8

Q :

재난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급받은 보상금을 '특정 목적 교부금' 성격으로 보아, 예산 성립 전 선집행 후 사후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재난으로 수령한 보상금의 성격 및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보상금은 재난으로 인해 건축물 복구 비용으로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용도가 지정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이라도 선집행이 가능하며 사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보상금은 '잡수입' 등 기타교육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복구비 지출 시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판단하시어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운영수익 : (관) 5400 교육외 수입 (항) 5420 기타교육외수입 (목) 5421 잡수입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9

Q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마쳤으나, 이사회 심의 과정 중 사업 변경에 따른 계정과목 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과 이사회가 의결하려는 내용이 상이해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예산에 대한 재심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의결은 이사회에 보고되는 최종 예산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위원회가 검토한 예산안과 달라졌다면, 변경된 최종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사를 다시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변경된 예산안에 대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제1호(회계의 구분 등)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위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10

Q :

건물 신축 공사(약 5년 소요)를 위한 경비가 xx억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비 총액을 xx억 원으로 설정하여 해당 금액을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계속비 총액 설정 및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건물 신축 공사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계속비 총액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액 전체를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회계 원칙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속비 총액(xx억 원)은 예산서 상의 이월금 항목에 직접 나타나는 금액이 아니므로 예산서 상의 '계속비이월금'은 총액이 아니라 매년 배정된 예산 중 실제 집행하고 남은 실질적인 잔액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제2항(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제2항(미사용이월자금)

- ②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 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11

Q :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보험료, 점검비용 등)을 '기타 운영비' 계정으로 예산 일괄 편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타운영비'로 일괄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나 점검비용 등 성격이 명확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기타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출의 실제 성격에 부합하는 계정과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관리 내역은 '세목'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 (목) 보험료 - (세) 연구실안전보험료  
(목) 지급수수료 - (세) 연구실안전진단수수료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10 시설관리비 (목) 4216 보험료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9 지급수수료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예산) 12

Q :

예산 편성 시보다 논문 심사 대상자가 늘어나 실제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기 편성 예산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해당 부족분을 '목적성 지출'로 간주하여 내부 결재만으로 선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논문심사비 부족분을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논문심사비 부족분은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국고보조금,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 결재만으로 선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마친 후에 논문심사비 부족분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교비회계

# 3. 자산취득 및 관리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1

Q :

교비회계 소속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전환하고자 하나, 차감할 법인 출연기본금(기본금) 잔액이 부족하여 전환 자산의 가액이 이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교비회계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전환 시 금액이 상이한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법인 출연기본금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법인 출연금' 세목을 차감하여 음수(△ 또는 -)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 교비회계 : (차) 감가상각누계액 250 / 법인 출연금 △750  
(대) 건물 1,000

법인회계 : (차) 건물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 / 설치학교 투자금 △750

결론적으로, 과거 학교가 자체 매입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용도 전환 시에는 법인 출연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유지하시되, 잔액 부족 시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3.11.)」 37P

###### □ 기본재산 용도변경

###### ○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①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 미치고, ②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 학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법인계정을 차감("기본금\_출연기본금\_법인"에 "법인 출연액 차감"세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 학교법인은 제공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설치학교 계정 차감("투자및기타자산\_설치학교"에 "설치 학교 투자액 차감" 세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2

Q :

교비회계에서 교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교지로 편입하고자 할 때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서 모두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교비회계에서의 교지 편입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비등록금회계의 경우 토지 매입 시 특별한 제한 없이 지출이 가능하며, 등록금회계 재원으로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박물관 유물의 매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등록금회계로 토지 매입 지출이 가능합니다.

1.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 (기존 토지 매각대금 한도 내)
  2. 기숙사 등 교육용 건물 취득 시 함께 취득하는 해당 건물의 부지
  3.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캠퍼스 이전 계획에 따른 토지
- 질이하신 토지 매입이 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3.11.)」 13P

###### □ 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
- 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매각대금 한도), 기숙사 등 교육용건물 취득 시 건물의 대지, 캠퍼스 이전 계획(교육부 사전 승인)에 따른 토지 구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매입 가능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3

<b>Q :</b>	<p>신규 재학생 증가로 기숙사 및 강의실에 천장형 에어컨을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입 시 적정 계정과목, 설치비 등 부대비용의 자산 합산 여부, 수리비 발생 및 폐기 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p>
<b>A :</b>	<p>천장형 에어컨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계정과목 분류 및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b>가. 천장형 에어컨 설치 시 적정 계정과목</b> 천장형 에어컨은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건물'로 인식</p> <p><b>나. 부대비용의 자산 합산 처리 여부</b> 자산 취득 시 취득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설치 후 사용이 완료되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자산(건물)으로 인식</p> <p><b>다. 수리비 발생 시 적정 계정과목</b> 건물 가액에 포함된 천장형 에어컨의 수선비는 '건축물관리비' 계정</p> <p><b>라. 폐기 시 회계 처리 방법</b> 사용 불능으로 폐기할 경우,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만큼 자산 가액에서 제외</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1. 자산 : (관) 1300 고정자산 (항) 1310 유형 고정 (목) 1312 건물

#####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42P

###### ① 취득금액 및 인식시기

일반적인 관점에서 취득원가주의란 그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원가(부대비용)를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부대비용까지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부대비용의 범위는 운반비, 설치비, 관련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10 시설관리비 (목) 4211 건축물관리비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4

Q :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등록금회계에서 진출된 적립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 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 상품은 사학기관이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 재원의 건축적립금은 원본 및 운용수익에 대해 용도 변경이나 유가증권 투자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예치 시에도 반드시 그 외의 건축적립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 ①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5

Q :

교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해당 건물 매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등록금회계에서 교외 기숙사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정자산 매입 지출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하지만,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와 박물관 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허용됩니다. 아파트는 건물 자산에 해당하므로 등록금회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예산 규모가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3.11.)」 13P

###### □ 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
- 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매각대금 한도), 기숙사 등 교육용건물 취득 시 건물의 대지, 캠퍼스 이전 계획(교육부 사전 승인)에 따른 토지 구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매입 가능

※ 이 경우 교육용 토지 대체취득 후, 잔액은 등록금회계에 속하며 교육비로 재투자

※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회계로부터 토지매입비,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6

Q :

미술품을 기증받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로비에 전시한 상황입니다. 이 때 회계 처리 기준 일자와 적정 계정과목, 자산 등재 시 감가상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미술품을 기증받은 경우 회계처리 방법 및 감가상각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물 기증 자산의 회계처리는 이사회 심의 의결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산을 수령한 기증일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해당 미술품이 교육 및 연구용 기자재가 아닌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면 집기비품보다는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술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성격의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객관적인 시가 확인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 2곳의 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제2항(자산의 평가기준)

- ②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1. 자산 : (관) 1200 투자와기타자산 (항) 1240 기타자산 (목) 1249 기타자산
1. 자산 : (관) 1300 고정자산 (항) 1310 유형 고정자산 (목) 1315 집기비품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제1항(감가상각)

-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7

Q :

법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소프트웨어를 공동 구매하고자 할 때, 라이선스 및 부대비용(교육비, 사용료)의 적절한 계정과목과 기관별 자산 취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법인,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의 회계처리 및 자산취득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산프로그램 라이선스는 '집기비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집기비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구매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육비는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라이선스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기적인 사용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대학, 산단이 비용을 안분하여 부담한 경우, 부담한 금액만큼 각 회계별로 각각 자산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4조제2항(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 ②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1. 자산 : (관) 1300 고정자산 (항) 1310 유형 고정자산 (목) 1315 집기비품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9 지급수수료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8

Q :

대학(교비회계)에서 유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대학이 직접 신탁에 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경우 법인에서 운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대학(교비회계)이 기부받은 자산을 신탁 상품으로 운용하거나, 이를 법인으로 이관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대학(교비회계)에서 기탁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기부받은 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신탁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학(교비회계)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사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득한 후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2항(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 2)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9

Q :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30만 원 이상은 '집기비품매입비' 계정으로, 30만 원 미만은 '소모품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집기비품매입비' 계정으로 지출했다면 단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산으로 등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취득단가 기준에 따른 자산 등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학의 내부 규정은 30만 원 이상의 물품 매입 지출에 한하여 자산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일부 물품 구입 시 관리 필요성 등에 의하여 집기비품 매입비로 인식하였다면 해당 물품은 자산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4호(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10

Q :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미사용하는 기계기구를 무상 이관받고자 하는데 내용연수가 50% 경과한 자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 및 취득가액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자산을 무상 이관받을 때 발생하는 내용연수 적용, 취득가액 산정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에는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바가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기준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자산의 취득 시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가능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산별 특성에 따른 일관된 내용연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단에서 대학으로 자산 이관 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단은 '학교 회계전출금'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대학은 '산학협력단전입금'으로 수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51P

[표 4-9] 중고자산내용연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을 경과 하였으면 수정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하다.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 3)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2. 운영비용 : (관) VI. 학교회계전출금

#####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운영수익 : (관) 5200 전입및기부수입 (항) 52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목) 5241 산학협력단전입금

**교비회계**

## **4. 수입**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1

Q :

대학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봉사 관련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 교비회계에서 수입 처리할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수령하는 보조금의 수입 처리 계정과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회계원칙 상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은 실제 자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아닌 '재원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즉, 보조금 교부 공문이나 협약서를 통해 해당 자산의 원천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재원의 출처가 2곳 이상일 경우 추가 되는 곳으로 계정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 법인의 자체 자금 또는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조성된 경우 : 기부금수입  
법인이 정부부처 예산 위탁받아 지급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수입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9조제1항(운영계산의 방법)

-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5200 전입및기부수입 (항) 5220 기부금수입  
2. 운영비용 : (관) 5200 전입및기부수입 (항) 5230 국고보조금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2

Q :

국고사업 기간과 대학 회계연도가 상이하여, 국고 지원금 입금 전 인건비 등 비용 집행이 먼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고 사업 지출 처리 후 수입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국고사업 기간과 대학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인한 국고사업비의 수입 인식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고사업 협약서상 사업 기간에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했다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해당분만큼 당기 말에 수익을 인식하고 상대 계정으로 '미수금'을 계상합니다.

**ex)** 분개 : (차)미수금 XXX / (대)국고보조금수입XXX

지출 : (차)급여 XXX / (대)예금 XXX

그리고 실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점인 차기에 기 설정한 미수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ex)** 분개 : (차)예금 XXX / (대)미수금 XXX

즉, 대학 회계연도 종료일(2월 말) 기준으로 1~2월에 집행된 국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수금 처리를 통해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9조제1항(운영계산의 방법)

-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1. 자산 : (관) 1100 유동자산 (항) 1120 기타유동자산 (목) 1123 미수금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3

Q :

계절학기 수업의 개설 확정 전에 수납한 수업료 인식과 추후 해당 수업이 폐강되어 환불해야 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계절학기 개설 전 수업료 수납 및 폐강에 따른 환불 회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업 개강 전 또는 개설 확정 전 수취한 금액은 '등록금선수금' 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익 인식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교육 용역 제공이 시작되기 전(개강 전)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용역 제공 시점까지 인식을 이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강하는 시점에 기 설정한 '등록금선수금'을 '학부수업료' 수입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폐강에 의해 중도 환불해야 하는 경우, 수업료 수입으로 대체하기 전이라면 '등록금선수금'을 직접 반제하고 예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이미 '학부수업료'로 수입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폐강 등의 사유로 환불한다면, '학부수업료'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82P

[등록금선수금 회계처리]

(회계처리 해설)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수입금액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용역제공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까지 인식을 이연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매년 복학과 휴학이 반복되는 현실과 효익/비용관점을 고려하여 학교는 휴학생 발생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2. 부채 및 기본금 : (관) 2100 유동부채 (항) 2130 선수금 (목) 2131 등록금선수금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운영수익 : (관)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항) 5110 등록금수입 (목) 5113 학부수업료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4

Q :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전기료가 과납되어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급금을 재원이 부족한 비등록금회계로 수입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여 환급된 비용을 비등록금회계로 수입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등록금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건축적립금 적립, 차입금 원리금 상환)가 아닌 경우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비용의 반환금은 반드시 등록금회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당해 연도 지출분을 당해 연도에 환급받는 경우는 원래 지출했던 계정과목인 '전기·수도료'의 환입(지출의 차감)으로 처리하고, 전기 지출분을 당해 연도에 환급받는 경우는 등록금회계의 '잡수입' 계정으로 세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5

Q :

RISE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를 수령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타 대학의 사용분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교비회계에서의 적절한 수입처리를 위한 회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RISE 사업의 주관대학으로서 타 대학(참여대학)에 사업비를 배분할 때의 적정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주관대학은 전체 사업비 중 본교가 직접 소진하게 될 예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대학(참여대학)으로 이관해야 하는 재원은 주관대학의 수익이 아니므로, 수납 시 '예수금' 등으로 부채 인식한 후 지출 시 해당 예수금을 반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체 금액을 주관대학에서 인식한 후, 타 대학에 배분 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주관대학의 수익·비용이 과대계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6

Q :

매달 발생하는 장소사용료 수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대행 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만약 장소사용료 100만원 발생 시 업체가 대행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순액 90만원만 입금할 경우 적절한 수입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교내 장소사용료(임대료) 수입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정산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회계원칙상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체 금액인 100만원을 '대여료 및 사용료' 등 수입으로 처리하고, 대행수수료 10만원을 '지급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업체로부터 전체 수입과 비용의 내용을 정리한 거래명세서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운영수익 : (관) 5300 교육부대수입 (항) 5320 증명·사용료수입 (목) 5322 대여·사용료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20 일반관리비 (목) 4229 지급수수료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30 운영비 (목) 4233 일반용역비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2호(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7

Q :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추후 학생들에게 해당 금액을 받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집행한 경우, 추후 회수 시 수입 계정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대납 성격으로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보험료를 대학에서 선납하고 추후 학생들로부터 회수할 때의 회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학이 해당 보험 업무(가입, 지급 등)를 주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대납해 주는 형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대학이 주관하는 경우 선납 시에는 '보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추후 학생들에게 회수할 때는 '잡수입' 계정으로 수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료를 학교 재정이 아닌 학생이 부담해야 할 돈을 학교가 잠시 대신 내주는 형태라면, 수입 및 지출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운영수익 : (관) 5400 교육외 수입 (항) 5420 기타교육외수입 (목) 5421 잡수입
2. 운영비용 : (관) 4200 관리·운영비 (항) 4210 시설관리비 (목) 4216 보험료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2. 부채 및 기본금 : (관) 2100 유동부채 (항) 2120 예수금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8

Q :

한 학과에서 법령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입의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학과의 교육 수강료 수입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강료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학교의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과정이 학과의 학점 취득이나 졸업을 위해 필수적인 정규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면 '학부수업료' 또는 '대학원수업료'로 인식합니다.

만약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나, 대학에서 신청, 등록, 수료 등 일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운영하며 수험생의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면 '단기수강료' 계정을 사용하며, 대학이 교육 전반을 주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을 수납하여 외부 기관에 전달하는 경우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1. 운영수익 : (관)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항) 5110 등록금수입 (목) 5113 학부수업료
- 1. 운영수익 : (관)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항) 5110 등록금수입 (목) 5114 대학원수업료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 2. 부채 및 기본금 : (관) 2100 유동부채 (항) 2120 예수금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9

Q :

본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교육 사업을 맡아 운영 중입니다. 이는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위탁용역 계약' 형태이며, 대학은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수입계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지자체 위탁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수납할 때의 적정 계정 과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위탁용역이라면 '국고보조금'이 아닌 '기타교육부대수입' 또는 '잡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되므로 질문하신 사업처럼 학교가 지자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명확한 반대급부(용역 제공)가 존재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은 보조금의 성격보다는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용역수입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교 회계 시스템상 교육과 관련된 부수적 수입이라면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그 외의 경우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더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정의)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교비회계

### - 교비회계(수입) 10

Q :

대학 부속 봉사센터가 공익재단 복지사업에 참여하려 하나, 재단 측에서 대학이 아닌 봉사센터를 통한 독립적 사업 추진 및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센터 명의로 독립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공익재단의 복지사업을 대학 부속기관인 봉사센터가 독립 수행을 위해 교비가 아닌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 예산은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수취 시 별도 계좌로 수취하되 교비회계의 중앙회계부서에서 통제하여 부외계좌(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계좌)가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IV

## 산학협력단회계 상담사례

1. 지출
2. 수입
3. 자산취득 및 관리
4. 결산

# 산학협력단회계

## 1. 지출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1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Q :

'2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금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강의료, 수당 등은 일회성·다회성 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25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기타사업비 내 인건비 계정 사용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정된 회계처리규칙상 신설된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금사업비 계정 하위의 '인건비' 비목은 기타산학협력사업(기타지원금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및 수당 등을 계상하는 비목으로 일회성·다회성을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 성격으로 발생하는 경비의 지출 시 사용합니다.

추가로, 회계처리규칙 개정일자는 7.22일이지만, 부칙에 따르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25년 회계 재무제표의 작성 시 개정된 회계처리규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단일 회계연도 내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개정된 회계처리규칙을 당기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행 '25.7.22.)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2. 운영비용 : (관) Ⅰ. 산학협력비 (항) 5. 기타산학협력비 (목) 1) 인건비(신설)  
(관) Ⅱ. 지원금사업비 (항) 3. 기타지원금사업비 (목) 1)인건비(신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2

Q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은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 소속인 교수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외부인원'으로 간주하여 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회의비 중 식비 집행 시 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의 외부인원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자만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 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이 포함되므로, 산학협력단과 같은 대학 소속인 교수는 외부인원이 아닌 내부 인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연구 수행 관계에 따른 제한 참여연구자가 법적으로 별도 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겸직하고 있거나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식비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17P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자(예: 외부 참여연구자)가 사실상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참여연구자와 내부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3

Q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인건비나 기관 공통비용의 집행 시, 간접비 예산이 부족하여 법인카드 캐시백 수입이나 별도의 이윤 등을 재원으로 지출할 경우, 적절한 비용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간접비 예산 부족 시 타 재원(카드 캐시백 등)을 활용하여 지출할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캐시백 등은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인식한 재원은 일반관리비(인건비, 일반제경비)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지출 처리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운영 외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운영외비용 계정과목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제2항(운영계산서 작성기준)

-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V. 운영외수익 (항) 1. 운영외수익 (목) 11) 기타운영외수익
2. 운영비용 : (관) IV. 일반관리비 (항) 1. 일반관리비 (목) 1) 인건비
2. 운영비용 : (관) IV. 일반관리비 (항) 1. 일반관리비 (목) 5) 일반제경비
2. 운영비용 : (관) V. 운영외비용 (항) 1. 운영외비용 (목) 8) 기타운영외비용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4

<b>Q :</b>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된 RISE 사업비 일부를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을 통해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사업 관련 기자재 구입 등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A :</b>	<p>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RISE 사업비 교비회계 이관 후 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RISE 사업비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교비회계로 넘겨 집행해야 할 경우, '학교회계전출금' 계정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산단이 대학에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의미하는데, 국고보조금의 이동은 산단의 지원이 아닌 보조금 재원의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p> <p>따라서 산단에서는 해당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 후 대학으로 이관 시 예수금의 반제로 처리하거나 '지원금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대학으로 이관하고, 대학은 이를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인식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위에 따라 학교회계로 자금을 적절히 이관했다면, RISE 사업계획서의 목적 범위 안에서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2. 운영비용 : (관) VI 학교회계전출금(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및 전출하는 자산)

**2) 교육부 「산학협력 길라잡이 1권」 35P**

산학협력단 회계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모두 법률적으로 학교법인에 독립된 별도의 회계이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에 근거하여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5

Q :

소프트웨어의 1년 이용권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

사용기간이 1년인 소프트웨어의 회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용기간이 1년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내용연수(1년)에 따라 당기에 전부 상각되어 전액이 다 비용처리 됩니다. 즉, 자산화 처리 후 상각하는 것과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 모두 취득가 전액이 당기에 비용처리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취득 시점에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상각)

11.26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11.2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6

Q :

산학협력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임대료를 책정하여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산학협력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건물은 대학 소유)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간접비 재원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점유한 공간의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및 소유권은 대학에 있으나 점유는 산단이 하는 공간의 수리비를 산단 간접비 재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건물을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임대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단과 대학사이에 공간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산단이 대학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산단이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단의 협의에 따릅니다.

또한, 산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소유의 건물이라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은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산학협력법상 산단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간접비(국가 R&D 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 등 쓰임의 제한이 있는 간접비를 제외한 자원)를 활용하여 해당 경비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회계의 구분 등)

-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산학협력단의 업무)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7

<b>Q :</b>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 선정 시 지급하는 수주 성공 장려금을 '연구활동지원금' 계정으로 지출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기타사업 간접비' 재원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b>A :</b>	<p>산학협력단(이하 '산단') 연구과제 수주 성공 장려금의 적절한 지출 계정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한 도서구입비, 학술대회 지원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를 지원하는 계정이며, 언급하신 장려금은 성격상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연구활동 지원금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료됩니다.</p> <p>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은 간접비로 지출 가능하며, 만약 국가 과제 간접비를 재원으로 한다면,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p> <p>쓰임의 제한이 특별히 없는 비 국가과제 간접비를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산단 급여 관련 내규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결재만을 토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2. 운영비용 : (관) Ⅲ. 간접비사업비 (항) 2. 연구지원비 (목) 8) 연구활동지원금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42P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8

Q :

대학 소속 교수가 산학협력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발생한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된 대체 강사의 인건비를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업무 수행에 따른 대학 대체 강사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수의 출장이 산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대체 강사 인건비) 역시 산단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산단에서 강사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강사의 소득이 대학과 산단 두 기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 세무 관리(원천징수 등)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단이 해당 금액을 대학으로 지급하고, 대학이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인건비' 계정을 사용하여 지출하고, 대학에서는 예수금 수입 및 지출 등으로 처리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지출)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9

Q :

산학협력단에서 교원들의 정부연구과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때,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다과비와 식사비를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학협력단(이하 '산단')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과제 관련 설명회 등 개최 시 발생한 다과 및 식사비의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참여 독려 설명회 등 개최 경비는 연구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해석되므로, 산단 예산으로 관련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사용하고자 하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간접비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공통비용', '연구활동지원금', 또는 '기타지원비' 계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접비 외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관리비-일반제경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기 답변은 발생한 경비에 대해 실비 정산(카드 결제 등)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만약 개인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소득세 처리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3호(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2. 운영비용 : (관) Ⅲ. 간접비사업비 (항) 2. 연구지원비 (목) 8) 연구활동지원금
2. 운영비용 : (관) Ⅲ. 간접비사업비 (항) 4. 기타지원비 (목) 1) 기타지원비
2. 운영비용 : (관) IV. 일반관리비 (항) 1. 일반관리비 (목) 5) 일반제경비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10

Q :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창업보육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입주하는 각 호실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해당 공간에 대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비용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사용하는 대학 공간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간접비 계정으로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간접비는 쓰임의 제한이 있는 간접비와 큰 제한없이 활용이 가능한 간접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 R&D 연구과제 등에서 발생한 간접비의 경우, 과제의 성격 및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라 간접비의 쓰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에서 수주한 과제의 간접비는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한이 있는 간접비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주관기관의 지침 상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한이 없는 간접비의 경우에는 산단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시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산학협력 길라잡이 2권」 123P

간접비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계정과목을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비수익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지원금 연구수익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간접비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산학협력단회계**

## **2. 수입**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1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Q :

'2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학생산재보험 비목이 신설되어 대학에서 기납부한 산재보험료 금액을 학교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학에서는 보험료 수입금에 대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학생산재보험료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학생 산재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및 지출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비용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1) 학교에서 보험료 계정으로 이미 지출한 것을 산단이 보전하는 경우  
: 산단에서 학생산재보험료 계정으로 지출(받는 계좌는 대학계좌), 대학은 보험료 지출 계정의 환입(보전처리)로 회계처리
- 2) 대학에서 아직 보험료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산단에서 학생산재보험료 계정으로 지출(받는 계좌는 대학계좌), 대학은 예수금 수입 처리 후 보험료 지출시 예수금 반제처리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행 '25.7.22.)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2. 운영비용 : (관) Ⅲ. 간접비사업비 (항)2. 연구지원비 (목) 5) 학생산재보험료(신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2

Q :

기술료를 현금이 아닌 상대회사의 주식으로 수령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수령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절한 회계 처리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 :

기술료를 주식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해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에서의 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단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법령상, "주식으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산단은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내 매매 의도가 있는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 하며, 이때에는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운영외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 수익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장기투자금융자산'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3호(수입)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9조(유가증권의 평가)

산학협력단 회계의 단기매매금융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단, 장기투자금융자산과 지배권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3

Q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납부하는 보육료 수입의 회계 처리 시, '기타 산학협력수익'과 '임대료수익' 중 적절한 계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육료 수입의 회계 처리 시 적절한 계정과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입의 성격에 따라 수입 계정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보육료의 실질이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차 거래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대료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만약 보육료 내역 중 경영활동 컨설팅, 기술자문, 교육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 등이 임대료와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기타산학협력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보육료 안에 위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면, '임대료수익' 등으로 합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료 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목) 2) 임대료수익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5. 기타산학협력수익 (목) 1) 기타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4

Q :

외부협의회와 협약에 따라 관련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수익은 '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의 수익 계정 분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강도 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교육운영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대가성이 없는 고등교육 지원 성격이며, 교육 대상이 대학(원)생이고, 교육 종료 후 수혜자가 지원 기관에 대해 별도의 활동 의무가 없는 경우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에 해당합니다.  
 또는 해당 프로그램이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며(대가성 있음), 교육 대상이 대체로 외부인이며, 교육 종료 후 수혜자가 요청 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질의하신 해당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그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여 계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2. 교육운영수익 (목) 1) 교육운영수익
1. 운영수익 : (관) II. 지원금수익 (항) 2. 교육운영수익 (목) 1) 교육운영수익

##### 2) 교육부 「산학협력 길라잡이 2권」 102P

구분	산학 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교육목적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함 ⇒ 대가성 있음 (예)요청기관 인력 재교육, 특정 전문 인재 육성	고등교육 지원 ⇒ 대가성 없음
교육대상	대체로 외부인	대학(원)생
교육 종료 후	교육수혜자는 요청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	교육 수혜자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 없음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5

Q :

적립금을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으로 운영하여 만기 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사업 수행 비용(간접비사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재적립해야 하는지(선급법인세 환급액 포함 여부), 운영차익처분계산서상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적립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며 발생한 이자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당기에 집행 가능하다 사료되며, 다만 적립금의 적립 취지와 부합하는 목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기에 소진하지 않은 이자수익이 있을 경우, 이자 및 이자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액도 포함하여 해당 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자수익이 발생한 당기에 목적에 맞게 모두 비용으로 소진하였다면, 이는 운영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되므로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할 내용이 없으나, 이자수익을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운영차익처분액(적립액)' 항목에 표시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산학협력 길라잡이 2권」 64P

###### 5 기타비유동자산

특정기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수익을 운영차익의 처분절차 없이 특정기금에 재예치하면 특정기금과 적립금 금액이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도 이자수익을 모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 적립금의 증가로 처분한 후 특정기금에 재예치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6

Q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산학협력단이 수주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적절한 수입계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수익 계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6년 1월 현재, 교육부와 과기부의 협의를 거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익은 '지원금수익-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정부연수수익'과 대응되는 계정인 '지원금사업비-연구비' 하위의 항목(①인건비 ②학생인건비 ③연구시설·장비비 ④연구활동비 ⑤연구재료비 ⑥연구수당 ⑦위탁연구개발비)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의 운영경비 및 사업 운영 인력(지원인력)의 인건비 등은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Ⅱ. 지원금수익 (항) 1. 연구수익 (목) 1) 정부연구수익
1. 운영수익 : (관) Ⅱ. 지원금수익 (항) 3. 기타지원금수익 (목) 1) 기타지원금수익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7

Q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는 '현물기부금' 계정이 누락되어 있으나, [별지4] 운영계산서에는 '현물기부금'이 존재합니다. 해당 계정의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의 회계 처리 시 현물기부금 계정과목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4] 운영계산서 양식의 계정과목에 '현물기부금' 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물기부 발생 시 해당 계정으로 인식하시어 수입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상 현물기부금 관련 해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오류로 보입니다. 추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재개정될 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 4] 운영계산서

1. 운영수익 : (관) IV. 전입및기부금수익 (항) 2. 기부금수익 (목) 3) 현물기부금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8

Q :	RISE 사업 중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시제품 연구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체 대응자금을 지출 목적(연구비)에 맞춰 '지원금수익-연구수익_산업체연구수익'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연구개발 과제에서 발생한 산업체 대응자금 수익의 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수익은 그 발생 원천과 목적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산업체가 지원하는 대응자금에 대가가 없거나, 연구 결과물(시제품 등)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대학)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지원금수익-연구수익_산업체연구수익'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구 결과물(시제품 등)에 대한 권리를 기업체가 소유하는 등 대가 관계가 명확한 경우라면 '산학협력수익_산업체연구수익'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 1. 운영수익 : (관) Ⅱ. 지원금수익 (항) 1. 연구수익 (목) 2) 산업체연구수익
-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1. 연구수익 (목) 2) 산업체연구수익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9

Q :

타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성능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 수익의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타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의 수익 계정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성능시험 용역이 산단에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성격에 가깝다면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장비 활용보다는 전문 인력의 기술 자문이나 단순 조사, 분석 등 인력을 이용한 일반 용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기타산학협력수익' 계정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목)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5. 기타산학협력수익 (목) 1) 기타산학협력수익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2호(수입)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10

Q :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수익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향후 직원의 인건비를 '간접비' 재원에서 지출하게 되어 임대료수익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임대료 수익을 '간접비수익' 계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창업보육센터 임대료수익의 간접비수익 계정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간접비수익은 산학협력수익이나 지원금수익 중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록하는 계정이며, 임대료수익은 산학협력단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을 외부 업체에 대여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수익을 간접비수익으로 계정 대체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 처리가 아닙니다.

남은 임대료 수익은 그대로 '임대료수익'에 따른 '운영차익'(잉여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 용처는 예산 편성 상황 및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제2항(운영계산서 작성기준)

-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Ⅲ. 간접비수익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목) 2)임대료수익

산학협력단회계

### 3. 자산취득 및 관리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1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Q :	<p>'2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보유중인 자산의 내용연수를 개정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8년에 취득하여 내용연수 20년으로 상각 중인 '기타유형자산(구축물 성격)'의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p>
A :	<p>'25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p> <p>현재 재무상태표에 '기타유형자산'으로 계상 중인 자산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 가능합니다.</p> <p>첫 번째, 해당 자산이 '구축물' 성격이 명확하다면, '구축물'로 계정 과목을 대체하고 개정 규칙에 따른 구축물 내용연수인 20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잔여 기간 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두 번째,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건물이나 구축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설비나 비품의 성격이라면,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한다면, '08년 취득 후 이미 5년이 훨씬 경과했으므로 해당 자산은 상각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상각 잔액 전액을 당기에 모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p>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행 '25.7.22.)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제4항(감가상각 등)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2) 교육부 「산학협력 길라잡이 2권」 81P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과거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경험의 축적 등에 따라 이전에 행한 회계적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의 예로는 감가상각내용연수의 변경,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정률의 변경 등이 있다.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전진법).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2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Q :

'2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데 2025년 3월 1일 기준 취득 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변경된 내용연수의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잔존가액 전액을 '25년 한 해에 모두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

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 시, 변경 기준 상 이미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 결과, 이미 상각이 완료되었어야 하는 자산이라면 당기에 잔액을 모두 상각하시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행 '25.7.22.)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제4항(감가상각 등)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 2) 교육부 「산학협력 길라잡이 2권」 81P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과거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경험의 축적 등에 따라 이전에 행한 회계적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의 예로는 감가상각내용연수의 변경,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정률의 변경 등이 있다.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전진법).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3

Q :

산학협력단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구매한 차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업 및 감가상각은 완료된 상황이며, 해당 차량을 매각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재정지원사업으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의 매각 가능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업 및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가 0원인 상태라면,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사업의 관리 지침상 자산 처분에 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 가능할 것이며, 현금흐름표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유형자산매각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차량 매각과 관련 발생하는 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은 '일반 제경비' 또는 '기타운영외비용'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V. 운영외수익 (항) 1. 운영외수익 (목) 7)유형자산처분이익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3]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I. 현금유입액 (항)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목) 2)유형자산매각대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4

Q :

산학협력길라잡이상 언급된(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이후 최대 5년까지 계상할수 있으며)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의 범위에 기술지주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의 정의 및 비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지주회사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출자금의 범주에 기술지주회사 출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2]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즉 정부에서 지원한 간접비 재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라 기술한 것이라 사료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 간접비 : 다. 성과활용지원비 3)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해설)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5

Q :

연구과제 재원으로 구매 예정인 2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영구 사용이 아닌 기간 한정(2년, 3년)인 경우, 물품 등재하여 자산화를 해야하는지, 만약 자산화를 해야한다면 관련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기간 한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구매 관련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사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구매 계약이 아닌 임차 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임차 기간에 맞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구매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산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원칙적으로 '무형 자산(또는 집기비품)'으로 인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의 고시 기간(5년 등)이 아닌 실제 계약된 사용 기간을 내용연수로 설정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6

Q :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에서 취득하여 현재 상각 중인 현물 자산을 대학으로 전출하고자 하는데 산단과 대학이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학으로의 전출 가능 여부와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실습실 리모델링 비용을 기타유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관련 자산을 교비회계로 전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A :

산단에서 취득한 자산의 교비회계 현물 전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단회계와 교비회계에서의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 산단에서는 잔존가액으로 전출하시고 교비회계에서는 자산의 최초 취득일을 확인하여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 만큼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산단에서 실습실 리모델링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기타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했다면, 이를 대학으로 이관할 때 '학교회계 전출금' 계정을 사용하여 장부가액만큼 전출할 수 있습니다. 교비회계에서는 이를 전입받아 '건물' 등 자산의 실질에 맞는 계정으로 등재하고 '산학협력단전입금'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3호(지출)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2. 운영비용 : (관) VI. 학교회계전출금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7

Q :

기존에 구매한 연구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매한 경우, 이를 기존 장비(기계기구) 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산(무형자산)으로 보아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연구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자산 등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독립적 재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장비가 폐기된 이후에도 해당 소프트웨어만 따로 떼어 다른 장비에 설치하거나 독립 사용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으로 구분하여 등재합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특정 장비에 종속되어 장비의 부속품 성격으로 작동하거나 해당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용도로만 쓰인다면, 이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장비의 장부가액(잔존가액)에 구매 금액을 합산하고, 장비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함께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 직접비 (항목) 다.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

#####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식별가능성)

- 11.4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산학협력단회계**

## **4. 결산**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1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Q :

'2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신설된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을 당해 회계연도('25년) 결산에 바로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25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계정과목 반영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정된 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기에 바로 반영하셔야 하며, '25회계연도 결산 시 변경된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또한 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두 가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2025년 회계연도 개시일(3월 1일)부터 기말까지 누적된 회계처리 전체에 걸쳐 소급적용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행 '25.7.22.)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5조제1항(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①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2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Q :

'2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학교기업이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합산 운영계산서 및 합산 현금흐름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25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학교기업 합산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기업과 산단의 합산 재무제표 작성 시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산단 운영계산서의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학교기업수익'으로 인식하시고, 비용은 '산학협력비-기타산학협력비-학교기업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산단과 학교기업의 내부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한 값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흐름표는 형식상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하위의 세목에 대해 나열하고 있지 않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상의 현금흐름표 양식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실무적으로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기타산학협력수익' 하위의 학교기업 수익 세목이 신설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행 '25.7.22.)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 (관) I. 산학협력수익 (항) 5. 기타산학협력수익 (목) 2)학교기업 수익
2. 운영비용 : (관) I. 산학협력비 (항) 5. 기타산학협력비 (목) 3)학교기업 비용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3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Q :

'2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변경 내용을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에 작성한 지출결의서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표입력을 통한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

계정과목 대체 등의 회계처리 수정 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기존 결의서를 직접 수정하는 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계정과목에 대한 대체분개를 통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전표)**

(차변) 기타산학협력비\_기타산학협력비 1,000원

(대변) 현금 1,000원

→ 기타산학협력비 중 500원을 인건비 계정으로 대체

**(대체 분개)**

(차변) 기타산학협력비\_인건비 500원

(대변) 기타산학협력비\_기타산학협력비 500원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행 '25.7.22.)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4

Q :

학교기업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출자금·출연금 정리 및 손익 처리 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산하 학교기업 폐업 시 출자금 및 출연금의 정리 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된 폐업일 기준 재무제표를 토대로 당기 산학협력단 재무제표와 합산하여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기업이 산단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산단 재무상태표상 출자금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므로, 학교기업의 폐업에 따라 반환되는 출자금은 산단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의 회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자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 회수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타 운영외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기업회계"라 함은 법 제2조2호의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교기업 회계단위를 말한다.
2. "합산"이라 함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회계의 단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학교기업회계를 결합하거나 여러 가지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말하며, 사립대학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한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5

Q :

산학협력단이 교육운영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임차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차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타 적립금의 적립이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임차료 지출을 위한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적립금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사용 목적을 분명히 정하여 적립하고, 적립금을 사용할 때에도 그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 적립금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적립금의 성격을 재정의 한 후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귀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계신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상 강의실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차료에 대한 적립금의 조성 및 지출이 필요하나 현재 기타 적립금의 목적상 위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기타적립금을 신설(세목을 통해 관리 필요)하거나 적립 목적을 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적립 및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6

Q :

결산 시점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연구원에 대하여, 결산 시 (차변) 인건비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퇴직급여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소속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산단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취업규칙입니다.

내규 상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결산시점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시어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혹은 내규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교육부 「산학협력 길라잡이 2권」 69P

제5절 비유동부채

##### 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를 '퇴직금 추계액'이라 한다)을 부채로 계상하여 놓는 계정과목이다. 산학협력단 직원 중 학교에서 파견된 직원은 연금가입대상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비용 및 부채로 계상하는 이유는 회계원칙 중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회계처리이다. 퇴직금 추계액은 각 산학협력단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하면 된다.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7

Q :

대학이 산학협력단의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 분석 등을 진행한 경우, 대학에서 등록금회계로 분석료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

대학이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에 지급하는 시험분석료를 등록금회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분석료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 등 교육 목적으로 발생한 경비라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출금이 아닌 지출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계정(실험실습비, 용역비 등)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출금(또는 전입금)'은 산단회계 및 교비회계에서 대가성 없이 두 기관이 주고받는 자산을 계상하는 과목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계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1) 「사립학교법」 제13조제2항제5호(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2. 운영비용 : (관) 4300 연구학생경비 (항) 4320 학생경비 (목) 4323 실험실습비

## 산학협력단회계

###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8

Q :

산학협력단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이 '24년 5월에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지식재산권을 유형자산 폐기와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소멸된 지식재산권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무형자산(지식재산권)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소멸한 날('24년 5월)까지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4회계연도 개시일인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 분에 대한 상각비를 우선 인식하여 당기 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상각비를 반영한 후 장부에 남아 있는 최종 잔존가액은 '기타운영외비용' 계정을 활용해 제거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제3항(감가상각 등)

- ③ 제1항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제2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 **2025년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

발행일 : 2026년 5월

발행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대표전화 : 053-770-2500

홈페이지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asfo.or.kr](http://www.kasfo.or.kr)

(대학재정회계센터) <https://support.kasfo.or.kr>

※ 본 사례집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5년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회계상담 사례집」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

